

# 교원신규임용규정

2004.01.01. 제정  
2010.08.30.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혜제학원 정관 제42조 및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 교원인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신규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는데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공개채용 원칙 등)** 본교의 교원신규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채용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국내외의 석학, 중견학자, 기타 우수한 연구 및 교육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**제2조의1(특별채용 절차)** 특별채용은 교원신규임용위원회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. 다만, 교원신규임용위원회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채용 절차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.

**제3조(임용기간)** ①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  
②재임용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없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**제4조(임용계약)** ①임용계약은 당사자와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  
②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직급
3. 연봉금액
4. 재임용 관련 사항
5. 재임용 조건
6. 책임강의 시간
7. 기타 임용조건

**제5조(임용시기)**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.

**제6조(충원규모의 결정)** 총장은 법정교원 수, 전임교원대비 학생비율,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과별 충원 규모를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.

**제7조(충원분야의 결정)** 충원 분야는 본교의 교육과정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## 제2장 임용절차

**제8조(채용공고)**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행하되 지원마감일 15일 전에 채용분야·채용인원·지원자격·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·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9조(삭제)

**제10조(구비서류)** ①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서 1부 (본교 소정양식)
2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
3. 연구 및 교육계획서 1부
4. 학위 및 성적증명서 각1부
5.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1부
6. 연구실적 목록 (본교 소정양식)
7. 연구실적물 (최근 5년 이내) 각 3부
8. 주민등록등본 (외국인일 경우 여권, 비자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)

②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제출서류의 심사)** ①연구실적은 제출된 것만을 인정한다.

②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만을 인정한다.

### 제12조(삭제)

**제13조(연구실적의 심사)** ①연구실적은 접수 개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것에 한하여 심사한다.

②연구실적은 200%이상(학위논문 제외)을 원칙으로 하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연구실적의 환산율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.

**제14조(심사단계)** ①응모자에 대한 심사평가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한

다.

1. 기초심사: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등 심사
  2. 전공심사: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 능력 등의 심사
  3. 면접심사: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 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
- ②기초심사는 석·박사 학위 취득 학과 및 분야 60%, 학사학위 취득학과 20%, 학위 취득 이후 연구 활동 20%의 비율로 반영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.
- ③전공심사는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신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교원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의 교내·외 전현직 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인사가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- ④전공심사와 관련하여 교원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연구실적 평가 외에 논문발표회, 세미나, 시범강의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전공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총장은 면접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.

**제15조(심사평가 및 선발)** ①심사위원은 평가내용을 정리하여 ‘연구실적평가서’, ‘공개강의 심사 평가표를 작성하여 밀봉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②교무처장은 연구실적평가서와 당해 응모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‘종합심사조서’, ‘공개강의 종합순위표’ 등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에 의하여 적정배수의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한다.

③면접심사는 교원신규임용심사위원회 또는 총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면접위원이 담당하며 면접심사 평가서를 각각 작성하고 교무처장이 이를 종합한다. 면접위원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임용예정자를 면접하고 최종임용예정자수의 2배수를 정하여 이사장에게 임용제청을 한다.

⑤각 단계별 평가 방법 및 세부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6조(임용)** 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법인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교원으로 임용하되 임용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한다.

**제17조(결과통보)** 교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최종임용예정자에게 임용 사실을 통보하고 인사관련 담당자가 임용일 이전의 제반 사무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.

**제18조(심사결과공개)**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 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.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.

**제19조(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편중 채용 제한)**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,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체교원의 2/3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**제20조(삭제)**

### 제3장 임용자격

**제21조(임용자격)** ①본교의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.  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고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갖춘 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**제22조(경력계산)** 제21조에서의 연구 및 교육 경력의 계산은 ‘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’ (대통령령)을 준용한다.

### 제4장 삭제

### 제5장 삭제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이 규정은 2010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